

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	2002. 7
제출자	구미시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공기업법(2002. 3. 25 공포) 및 같은법시행령(2002. 6. 19공포)이 개정되고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따라 이사중 상임이사를 추가(안 제9조)
-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요건, 위원회의 자격요건, 운영방법 및 이사장후보의 추천방법을 개정하고자 함(안 제19조 내지 제23조)
- 예산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할수있도록 함.(안 제29조 제4항)
- 매 사업년도 결산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에 하도록 함.(안 제31조제1항)
- 조례 제33조 제목 계리의 원칙을 회계원칙 등으로 하고자 함.(안 제33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공기업법령 관련 규정

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9조제1항중 “이사장 1인과” 다음에 “상임이사와”를 추가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3.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위원의결격사유) 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시 소속 공무원(시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1조(위원회 존속)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2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시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이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29조제4항중 “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를 “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중 “3월”을 “2월”로 한다.

제33조의 제목 “(계리의 원칙)”을 “(회계원칙 등)”으로 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사장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이사) ①이사는 <u>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로</u> 구성한다. ② ~⑤ 현행과 같음.	제9조(이사) ①이사는 <u>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와</u>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. ② ~⑤ 현행과 같음.
제1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. 다만 공단의 신규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	제19조(위원회의 구성)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다음 각 호의자로 구성한다.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1. <u>시장</u>이 추천하는 자 2인 2. <u>구미시의회</u>에서 추천하는자 2인 3. <u>공단이사회</u>에서 추천하는자 2인 4. <u>공단의 감사</u> 1인	1. <u>시장</u>이 추천하는 자 2인 2. <u>시의회</u>에서 추천하는자 2인 3. <u>공단의 이사회</u>가 추천하는자 3인
②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	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. 1. <u>경영전문가</u> 2. <u>경제관련단체의 임원</u> 3. <u>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</u> 4. <u>공인회계사</u> 5. <u>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</u>

현행	개정안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.	③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시의회와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	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	⑤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제20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1.법 제60조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.제19조제1항 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단의 임·직원	제20조(위원의 결격사유)공단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소속공무원(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제21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.	제21조(위원회 존속)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현행	개정안
제22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총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③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.	제22조(회의)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.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간사는 시의 공기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 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23조(이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단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2인을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대상자를 의결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23조(이사장후보의 추천)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현행	개정안
③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.	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④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 하여야 한다.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제29조(사업계획 및 예산)①~③(생략) ④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	제29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~③(현행과 같음) ④----- ----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-----
제31조(결산)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. ② ~③ (생략)	제31조(결산) ①공단은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완료 하여야 한다. ② ~③ (현행과 같음)
제33조(계리의 원칙) (생략)	제33조(회계원칙 등) (현행과 같음)

□ 지방공기업법령 관련규정

- **지방공기업 제58조제4항** “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”이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” 개정되었음.

(2002. 3. 25공포. 6. 1시행)

- **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2 내지 제56조의3** (2002.6.19 공포)
제56조의2(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) ①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(이하 “추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
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

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2.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
3.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4. 공인회계사
5.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③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④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.

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임기만료, 그 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그 지방의 회와 공사의 이사회에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⑦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.

제56조의3(사장후보의 추천절차등) ①추천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사장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장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.

④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의 모집·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